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국민의 정의를 「국적법」에 따른 국민으로 변경〉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18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기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Ⅲ.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국민”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국민”이란 <u>대한민국의 국민</u> 을 말한다.<br><br>2. “외국인”이란 <u>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u> 을 말한다.<br>3. ~ 16. (생략) | 제2조(정의) -----<br>-----.<br>1. ----- 「 <u>국적법</u> 」에 따라 <u>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u> -----.<br>2. ----- <u>제1호에 따른 국민이 아닌 사람</u> -----<br>-----.<br>3. ~ 16. (현행과 같음) |

「대한민국 헌법」 제2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sup>1)</sup> 이에 따라 국적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국적법」<sup>2)</sup>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①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sup>3)</sup> ②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sup>4)</sup> ③ 귀화에 의한

1) 「대한민국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국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국적취득<sup>5)</sup>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행법은 제2조에서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sup>6)</sup> 그러나 「국적법」이 국적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현행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상 “국민”과 “외국인”이 「국적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 16. (생략)

다만,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입법된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이 결정되고 있고,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마찬가지로 「형법」 7), 「병역법」 8), 「국민연금법」 9) 등 다른 법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법원(1996. 11.12. 선고 96누1221 판결<sup>10)</sup>)은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 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sup>11)</sup>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sup>12)</sup>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수긍한바, 만약 개정안대로 「출입국관리법」에서의

7)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병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원심: 서울고법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조선인인 위 소외 1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1977. 8. 25.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국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11) 「국적에관한임시조례」(1948. 5. 1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2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

12) 「제헌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국민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면, 위 판결의 경우처럼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sup>13)</sup>, 「출입국관리법」 상으로는 외국인에 해당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sup>14)</sup>

|              |
|--------------|
| 문 의 처        |
| 02)6788-5057 |

13) 제정 국적법은 1948.12.20.부터 시행되었음.

14) 이 밖에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는 과거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국적 취득 후 국적 이탈·상실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판정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국적을 취득한 자로 볼 수는 없으나 국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음.

「국적법」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